부록 PM17.

**전남대학교병원 연구비 예산서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연구책임자** | **소 속** |  | **직 위** |  |
| **성 명** |  ( 인 ) | **IRB번호** |  |
| **연구과제명** |  |
| **연구비 지원기관** |  |
| **의뢰기관(Sponsor)** |  |
| **수탁기관(CRO)** |  |
| **연구예정 기간** | 계약일로부터 ~ 연. 월. 일. |
|  **(단위: 원)** |
| **비 목** | **내 용** | **금 액** | **산출 내역** |
| **직****접****비** | **인건비** | 연구에 참여하는 자의 인건비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지급불가) |  |  |
| **여비** | 국,내외 여행 소요 비용 |  |  |
| **유인물비** | 보고서 등 인쇄 및 복사슬라이드 등 제작비 |  |  |
| **기술정보활동비** | 자문료, 회의비, 학회참가 |  |  |
| **재료비** | 연구대상자 교통비시약 및 재료비, |  |  |
| **수용비 및 수수료** | 공공요금,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, 제잡비 |  |  |
| **연구관리비** | 과제관리비 및 장려금 |  |  |
| **공동기관연구비** | 전남대학교병원 전용(사용불가) |  |  |
| **ARO 용역비** | 전남대학교병원 전용(사용불가) |  |  |
| **직접비의 합(A)** | 직접비 항목 합계 **100%** |  |  |
| **약품관리비(B)** | 직접비의 **5%** |  |  |
| **간접비(C)** | 직접비의 **20%****(PMS**연구: 직접비의 **15%)** |  |  |
| **연구비 총액 (D=A+B+C)** | 직접비+약품관리비+간접비 |  |  |
| **부가가치세(E)** | 연구비 합계(D)의 **10%** |  |  |
| **합 계(F=D+E)** | 연구비 합계(D)+부가가치세 |  |  |

\* 간접비성 경비(약품관리비, 간접비) 처리 방법: 백원 미만(십원이하) 절사

\* 약품관리비가 직접비의 3~5%에서 직접비의 5%(2021년 2월 신규과제부터 적용)로 변경되었습니다(이전과제 미적용).

**◆직접비 사용용도◆**

**1. 인건비:** 연구에 관여하는 자의 인건비

가. 비전임 인력: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한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

나. 전임 인력: 연구와 관련된 전임인력인 경우 이용기관의 산출기준에 의해 산정

다.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함

**2. 여 비**: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병원규정에 준하여 작성

다만, 규정을 상회하는 여비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음

**3. 유인물비:** 보고서 등의 인쇄 및 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

가.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(최종 연도인 경우)

나. 자료 복사비, 논문 게재 비용

다. 기타 인쇄비: 연차보고서요약서, 인화비, 판넬 및 슬라이드 제작비 등

**4. 기술정보활동비:** 세미나 개최비용, 연구관련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

가. 학회가입비, 학회연회비, 관련 연구의 교육훈련비

나. 정보DB사용료,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, 기술정보 수집비

다.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

라. 자문료

마. 회의비 등

**5. 재료비:**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비용

가. 연구기자재비: 연구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실험기기 및 부품의 제작 구입비

나. 시약 및 재료비: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내구 년수가 1년 이하인 시약․재료구입비

다. 장기간 사용기기, 장비(전자계산조직 및 소프트웨어 포함) 및 부수 기자재 구입비

라. 기자재도입 부대경비(통관비, 보세, 운송료 등)

마. 내․외부기자재 이용료(임차료 포함) 및 연구시설의 설치, 구입, 임차,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보유 기관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일반 관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

바.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관련되는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

사. 조사․연구사업(예: 연구기획평가사업 등)의 경우와 같이 우편, 전화사용이 연구사업 내용의 주요부문

을 차지할 경우의 우편요금 및 전화 사용료 등을 재료비로 계상하되,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는

계상 할 수 없음.

아. 연구대상자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, 식대, 수고비 등 일반 관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

자.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각종검사, 약제관리 및 조제료 등

차. 전산처리비: 연구수행자료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컴퓨터 사용료, 전산처리 관련 재료구입비 또는

소모품비

**6. 수용비 및 수수료**: 공공요금(전신전화 사용료, 전용선 사용료 등),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, 제잡비, 기타 등

**7. 연구관리비**

가. 과제관리비: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가 연구개발, 수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

나. 장려금: 연구원의 능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

**8. 공동기관 연구비**: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공동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

**9. ARO 용역비**: ARO에 임상시험을 위탁하여 지급하는 비용